## 2022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루원시티 공공3블럭 루원복합청사 신축(계획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			심의일자	2022.2. 8.		
 건축종별	[ ○ ]신축,	[ ] 증최	<u> </u>	[ ]대수선,	[ ]	기타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인천광역시장				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						
	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3블럭		관련지번				
	대지면적 14,447.24m²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6,059.98 m²		건폐율 41.95%		층수	지하 : 2층/ 지상 : 13층	
	주용도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		구조 RC, 철골조		건축旨	건축물 동수 1동	
	최고높이 64.8m		용적률 210.74%		연면적	연면적 합계 46,466.62㎡	
심의내용	구 분			심의	심의결과		
	(계획분야)관련	O 입면 상부 음각 부분이 동절기 고드름 낙하 등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되므로 열선설치 등 방지계획을 고려할 것					
		○ 지하1층 어린이집 부출입구 위치와 차량출구가 인접하므로 난간설치 등 조치할 것					
	(구조분야)관련	O 입면이 캔틸레버로 형성되는 커튼월의 지지 구조를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것					
	(토목분야)관련	○ 우기시 배수 문제와 지하수 변동 등 안전문제를 고려할 것					
		O 인접한 지하철 관련 실시설계와 굴착공사 착공 전에 관리주체(인천 교통공사)와 협의할 것					
	(행정)사항	<ul><li>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</li></ul>					
		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 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					
		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					
	[ ] 원안 의결 <b>[ ○ ] 조건부 의결</b>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						
심의결과	**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